

4. 연구윤리 FAQ(대학원)

2023.12.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1. 연구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본교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검증)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 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 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 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

을 따를 수 있다.

-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 나.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으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사사 표기를 할 수 있다.
 - 다.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 라.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교신저자는 논문의 작성 및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받아야 한다.
 - 바.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 논문, 연구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해당 학문분야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 나.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1) 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의도적 연구부정행위 금지' (2) 연구자의 무능력, 부주의, 자기기만 등의 '비의도적 오류'가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충실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1)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 사항

- (1) 연구자는 위조/날조, 변조, 또는 부적절한 자료 조작 없이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연구 이미지(예: 현미경 사진, 방사선 사진, 전기 영동 젤 사진)를 오프셋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방법을 기술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출판물은 다른 연구자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 (3) 연구 보고서는 완전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자 또는 후원자의 가설이나 해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발견이나 결과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 (4) 연구 자금 제공자와 후원자는 그들의 제품이나 지위에 불리한 결과의 출판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연구자는 후원자가 결과의 발표를 거부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안보 문제로 정부가 기밀로 분류한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5) 저자는 제출했거나 수락 또는 출판된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저자는 편집인과 협력하여 정정 기사 또는 논문 취소를 발행해야 한다.

<출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2) 표절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인용'의 방법

올바른 인용을 위한 몇 가지 인용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 쓰기(paraphrasing)을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credit) 한다.
2.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 ”)로 표시해야 한다.
3.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은 직접 인용하든 말바꿔쓰기를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한다.
5.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6.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매년 심장병으로 몇 사람이 사망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 해답을 말할 때 누군가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게 되므로 그 출처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2011>

(3) 자기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 방지

<p>▶ 자기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p> <p>※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이 후속 저작물에 활용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에서 내용의 일부를 바꾸거나, 새롭게 첨가했다고 해도 논지와 결론 등이 두 저작물 사이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임. - 자기표절,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 논문 쪼개기, 논문 덧붙이기 등의 유형 존재 - 자신의 논문이라도 저작권은 학회나 출판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를 표기하고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p>▶ 대표적인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쪼개기: 하나의 연구논문을 2개 이상의 소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것 예) 학위 논문 중 일부를 떼어내어 여러 개의 소논문으로 발표함. (단, 학문분야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논문 덧붙이기: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 연구성과나 임상사례를 추가해서 마치 완전히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 (단, 이전 연구성과를 일부 재활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허용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p>
--

(4) 부당한 저자표시 방지를 위한 노력

<p>저자란,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람을 말한다(연구자 간에 저자 표시에 대한 동의는 매우 중요함).</p> <p>저자의 유형에는 제1저자(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구분된다.</p> <p>① 제1저자(주저자): 데이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 단 제1저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명이 될 수 있음.</p> <p>② 공동저자: 제1저자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히 기여한 자를 의미함.</p> <p>③ 교신저자: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서 출판 전, 출판 과정 중, 그리고 출판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함.</p>

다음의 부당한 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논문작성 시 주의하도록 한다.

<p>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요저자: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 명예저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저자 명단에 포함하는 경우(해당 유명인사에 아첨하기 위해 또는 논문의 투고를 원활히 하거나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 상호지원저자: 연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 연구논문에 저자로 포함시켜 주는 경우(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유령저자: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논문 저자에서 배제된 경우(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였으므로 표절에도 해당됨)

<출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3. 자주하는 질문(FAQ)

(1) 본문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국문요약, 서문, 결론 등에서 다시 언급할 때도 출처표기가 필요한가?

요약문은 저자의 표현으로 연구논문의 성격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용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가피하게 본문에 인용된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표현을 요약문에서 사용할 경우 본문을 통해 그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문이나 결론에서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다시 쓸 때에는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2021>

(2)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요? 표절 검사 결과 수치가 학회에서 정한 '표절 가능성 10% 이하'를 충족한다면 안심하고 원고를 제출해도 되는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문장 유사율(%)만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검사 결과 수치는 저작물 A의 문장들과 저작물 B의 문장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 문장의 유사성 자체가 곧바로 표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문장 유사도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표절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학문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고전 텍스트를 많이 인용해야 하는 분야이거나 기존 연구 성과들을 고찰(review)하는 성격의 논문일 경우, 문장 유사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표절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유사한 부분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하고도 고유한 연구 내용인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단 한 문장만 유사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다른 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표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 유사도 검사는 표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를 빠르게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보조 도구일 뿐, 단 한 문장에서의 표절과 같은 사례는 정확히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 수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 수치가 학회에서 정한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표절

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검토하고, 원문을 대조하여 인용 및 출처 표기를 확실하게 보강하는 것이 좋다. 표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글로 기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2021>

- (3) 이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으며 학위 논문을 위해 연구한 내용 중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게재하려고 한다. 학술지에 연구 내용을 게재한 후 그 내용을 다시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이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그 반대로 학위 취득 후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여기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중복게재가 아니다. 학위 논문에서 이전 발표된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출처 표기를 하느냐는 해당 대학의 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르면 된다.

반대의 경우로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관련 학문 분야에서 학위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는가의 여부 또는 해당 학술지의 학위 논문을 활용한 논문 투고에 대한 출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타당한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공학 분야에서는 학위과정 중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할 때,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는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허되는 학술지도 있고,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학술지의 논문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자신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해당 학술지의 출판윤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공학 분야의 경우, 학위 논문은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와 같이 표현되듯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출판물로 보아 학술지 논문에 활용된 학위 논문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학위 논문도 PDF로 전환되어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2021>

- (4)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 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학위 논문에 포함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 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인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 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시키지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 사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의논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5) 과제참여로 얻은 결과를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 가능한가?

이·공학 분야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즉,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와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다.

만일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이 먼저 제출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 및 해석이나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이·공계의 연구의 특성상 연구윤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 혹은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사사표기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주제로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출할 것이 기대된다. 새로운 주제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학위 논문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학위 논문을 통해 이미 어떤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고, 추후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그 결과물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이 학위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면, 연구비 신청 때부터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획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연구비 지원기관과 이를 믿는 독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출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6)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는 ① 연구(Research)에 해당하면서 ② 인간(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등 일반화한 지

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RB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과제연구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연구 수행 시 IRB 심의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자율에 따라 심의여부를 판단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학위 논문 작성 후 이를 토대로 학술논문을 작성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미리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안내, 2013>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4개의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발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이다. 즉, 데이터 수집의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핑계로 여러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한 후, 변수 하나씩 분석하여 각각의 논문으로 출판하려는 당초의 의도는 아니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이나 한 논문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각각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통합하여 발표하는 것보다 정보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분리(이른바 쪼개기 논문)는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려사항에서 충분한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논문에서 활용한 변수가 다르니 데이터 내용이나 이에 대한 분석, 논의 및 결론 등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의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은 동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활용되었고, 이후의 학술지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먼저 사용된 데이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와 나중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 간의 연계나 차이 그리고 동일한 샘플링에서의 다른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등을 기술한다면 독자들은 두 개의 논문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